



大學校圖書館을 위한 基準

美國圖書館協會 研究圖書館部會
美國圖書館協會 大學및研究圖書館部會 共同作成

李 炳 穆 譯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譯者 序 : 여기에 翻譯 紹介하는 美國의 “大學校圖書館을 위한 基準”(Standard for University Libraries)은 譯者가 本誌 1977年 6月號(제18권 제5호)에 역시 翻譯 紹介한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Standard for College Libraries)과는 學術圖書館(academic libraries)이란 觀點에서는 基本的으로 類似性이 많지만 ‘大學校圖書館’(university libraries)과 ‘大學圖書館’(college libraries)이란 觀點에서는 具體的으로 相違性이 있다. 그러한 差異點의 基準과 內容은 紙面關係上 「카아메기 高等教育委員會」의 區別方式을 包含하고 있는 上記 두가지 “基準”과, 그리고 下記 두가지 著書 즉 Rogers 教授와 Weber 教授 共著의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New York: H.W. Wilson, 1971)과 Lyle 教授의 *The Administration of College Library* (4th ed. New York, H.W. Wilson, 1974)를 參考하기 바란다.

우리는 一般的으로 大學과 大學校 大學圖書館과 大學校圖書館을 같이 區分하러 하지 않는 傾向이 濃厚하지만 美國의 경우 이를 意圖的으로 區分하려는 傾向이 濃厚한 便이다. 美國의 경우, 지금까지의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外에 이번 “大學校圖書館을 위한 基準”을 別度로 作成하게 된 緣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즉 大學(혹은 單科大學—colleges)이란 母體機關을 가진 大學圖書館(혹은 單科大學圖書館—college libraries)과 大學校(혹은 綜合大學校—universities)라는 母體機關을 가진 大學校圖書館(혹은 綜合大學校圖書館—university libraries)의 特性과 機能을 달리 보기 때문이다.

基準 翻譯에 있어서 ‘大學’과 ‘大學校’, ‘大學圖書館’과 ‘大學校圖書館’을 通念上 混用하고 있는 우리의 立場을 勘察하여 ‘university’를 ‘大學’ 혹은 ‘綜合大學校’로 ‘university library’를 ‘大學圖書館’ 혹은 ‘綜合大學校圖書館’으로 옮길가도 생각해보았으나 原 基準의 趣旨를 參酌하여, 또 우리나라 教育法에서 ‘大學’과 ‘大學校’를 區分하고 있는 點을 配慮하여, 그리고 지난번의 “Standard for College Libraries”를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으로 이미 翻譯 發表한 點을 考慮하여 ‘大學校’ ‘大學校圖書館’으로 옮겼으므로 이와 聯關해서 多少 어색한 部分이 있더라도 諒解하기 바란다.

本 基準은 本 基準의 ‘序’에서도 言及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1978年 10月 末 現在) ‘草案’으로 남아 있음을 밝힌다. ‘草案’을 미리 翻譯하는 理由는 첫째, 이제까지 大部分의 基準(standards)이나 指針(guidelines)이 草案대로 承認 혹은 採擇되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며 둘째, 설혹 多少의 內容變更이 있다 하더라도 全體 內容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며 셋째, 우리가 새로운 情報에 迅速히 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草案이 發表된 以後의 이에 대한 公式的인 論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CRL 理事會는 시카고에서 開催되었던 1978年度 ALA 年次總會 期間中 6月 26日과 6月 28日 두차례의 會合을 갖고 그리고 ACRL 會員들과의 聽聞會를 통하여 本 基準의 草案을 檢討한 結果 대충 다음과 같은 決定을 보았다. 첫째, 近來 크게 論議되고 있는 書誌教育(bibliographic instruction)¹⁾과 職員成長 및 持續教育(staff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에 대한 內容을 基準 本文에 適當히 添字해 보도록 하였고 둘째, 非 ARL 會員 大學校圖書館의 統計도 ARL 會員 圖書館의 統計에 包含시키도록 ARL과 協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오는 冬季會議에서 草案에 대한 承認 如否에 關해 最終決定을 내리기로 하였다.²⁾ 譯者는 本 基準의 推移에 대한 새로운 內容과 冬季會議에서의 決定內容을 情報가 入手되는 대로 우리 讀者에게 報告할 것을 約束하는 바이다.

序

다음의 大學校圖書館을 위한 基準은 美國圖書館協會의 研究圖書館部會(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와 大學및研究圖書館部會(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基準作成을 目的으로 設置한 共同

1) 美國圖書館協會 大學및研究圖書館部會 作成, 李炳穆 譯,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書誌教育을 위한 指針,” 도협월보, 제19권 제6호(1978. 7. 8), p.17 參照.
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No.8 (Sept. 1978), p.228+pp.231-232.

委員會에서 作成되었다. 이 委員會는 大學校圖書館基準을 成案하여 ARL과 ACRL에 提出할 責任을 띠고 1975年 12월에 構成되었다. 委員會는 같은 年 課業을 遂行하여 이제 그 結果로 다음에 紹介하는 文書를 提出하였다. ACRL會員들도 本文書에 대한 檢討를 容易롭게 하기 위하여 그 內容을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誌 本號에 紹介하는 바이다.

共同委員會의 初期 委員은 다음과 같다. Calvin Boyer—미시시피大學校 圖書館長, William Kurth—세인트루이스 所在 워싱턴大學校 圖書館長, Stanley McElder—시카고大學校 圖書館長, Richard Talbot—메서추셀大學校 圖書館長. David Watkins—브랜다이스大學校 圖書館長, Melvin Voigt—샌디에고 所在 캘리포니아大學校 圖書館長, Eldred Smith—미네소타大學校 圖書館長(議長). 2年間の 委員會 活動期間中 다음과 같은 委員職의 變化가 있었다. John McDonald—커네티컷大學校 圖書館長이 Voigt氏와 代置되었고 Beverly Lynch—시카고 서클 所在 일리노이大學校 圖書館長이 Kurth氏와 代置되었다.

委員會는 事業遂行過程에서 15回 以上이나 會合을 가졌다. 本 基準의 一次草案은 ARL 理事會, ACRL 基準委員會, ACRL 大學校圖書館分會運營委員會가 檢討해서 意見を 提示하도록 刊行되었다. 共同委員會 역시 大部分의 美國 高等教育機關 및 高等教育認可機構의 代表들과 1日 會合을 가졌다. 共同委員會의 事業을 위한 資金은 J. Morris Jones-Balley K. Howard ALA Goal Award와 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研究費로 마련되었다.

委員會가 審議過程에서 直面했던 가장 重要한 단 한 가지 論點은 基準이 質의이기보다는 量的이 되어야 하는가(혹은 될 수 있는가)하는 點이었다. 特殊한 成果測定法들을 包含한 各種 計量接近法을 相當數 調査研究하고 適用해 본 結果, 委員會는 어떠한 計量的인 基準도 現在로서는 大學校圖書館이라고 밝혀진 圖書館에는 全體的으로 그리고 規模面에서 適用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委員會는 그러나 어떤 計量 接近法은 이들 圖書館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選定한 小集團에는 適用할 수 있다는 結論을 또한 내렸다. 委員會가 역시 作成한 本 基準의 附錄은 計量 測定法을 모든 大學校圖書館에 適用하기는 어렵다는 事實을 說明하고 있고, 아울러 全體集團內에서 類似한 圖書館들을 比較하는데만 活用할수 있는 몇가지 計量 分析法을 紹介하고 있다.

本 基準은 現在 ACRL 基準委員會, ACRL大學校圖書館分會運營委員會, ARL 理事會에서 檢討하는 중에 있다. 本 基準에 대한 討論會는 1978年 6月 ACRL 시

카고 會議에서 가질 計劃으로 있으며³⁾, 그때 ACRL會員은 本 基準에 대한 共同委員會와 討議할 機會를 가지게 될 것이다. 本 基準에 대한 ARL 會員의 討議는 1978年 ARL 秋季總會에서 있을 豫定이다. —Eldred Smith.

緒 論

本 基準은 教授陣, 大學校管理者, 大學校司書, 大學校認可機構, 其他 大學校圖書館의 資源과 奉仕를 評價하고 改善하는데 關係하는 人士들을 돕기 위하여 作成되었다. 本文書는 카네기高等教育委員會(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가 “博士學位授與機關”으로 區分한 高等教育機關에 限해서 適用하도록 意圖하였다. 이러한 機關을 區別하는 基準은 “博士學位를 授與하고 聯邦政府로 부터 財政支援을 받는다”¹⁾는 데 있다. 이들 機關은 모두 大學院教育 專門職教育 그리고 研究를 重視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的인 類似性에도 不拘하고 大學校圖書館은 그 特性으로서 高度의 個性, 特히 政策 計劃 責任 傳統面에서 個性을 갖는다. 그러므로 本 基準은 모든 大學校가 劃一的으로 適用할 標準의인 規定을 設定하려고 意圖하지는 아니 하였다. 오히려 本 基準은 事情을 잘 알고서 하는 判斷은 個個 大學校의 狀況에 適用되어 질 수 있다는 테두리 안에서 一般的인 輪廓을 提示하려 하였다.

本 基準은 大學校圖書館이 大學校에서 中樞的인 그리고 決定的인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는 事實에 基本的인 假定을 두고 있다. 이러한 重要性은 高等教育 分析家들도 거듭 認知해 온 바 있다. 例컨대, Allan M. Cartter氏는 1966年 美國教育協議會(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 낸 그의 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圖書館은 大學校의 心臟이다. 결코 어떠한 단 하나의 非人間的인 要素도 大學校圖書館처럼 大學校教育의 質에 聯關된 것은 없다. 貧弱한 圖書館資源을 가진 極少數의 몇몇 大學校만이 圖書館以外的 다른 여러 分野를 相當히 強化시켜왔는데 그 理由는, 어떤 경우 實驗施設이 圖書館보다 特定主題分野 立場에서 불 때 더 重要하였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 大學校가 美國國會圖書館이나 뉴욕公共圖書館 같은 훌륭한 圖書館藏書에 가까이 位置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分野에서 健實한 大學校는 한결같이 有數한, 全國的인 研究圖書館을 가지고 있다.”²⁾

다른 모든 機關과 마찬가지로 大學校와 그 圖書館은 數次 相當한 變化를 經驗해 왔다. 새로운 變化가 現在 일어나고 있으며, 또 다른 變化도 將次 分明히 일어날

3) 譯者 序 參照.

것이다. 特別 注目할만한 일은 大學校間에 널리 相互依存하려는 생각과 協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大學校圖書館 立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發展은 特別 重要하다. 圖書館相互協同 特別 資源分擔의 增加; 書誌教育和 같은 奉仕計劃의 強化와 擴張; 非印刷媒體에 收錄된 記錄情報의 重要性 增加; 圖書館運營에 自動化시스템의 導入과 機械可讀데이터베이스의 增加; 司書와 教授陣間의 보다 密接한 相互作用(interaction)과 大學校內에서 司書의 身分改善; 運營의 能率과 効率性에 대한 強調 增加. 이러한 傾向 및 傾向의 重要性을 認知하는 일은 本 基準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이다.

學術資源을 開發하고 維持할 때 大學校間에 相互依存하는 傾向이 漸增하고 있음을 認知하면서, 本 基準은 大學校의 健康과 活力에 必須的인 그리고 大學校의 學事計劃에 必須的인 圖書館 自給의 水準(level of library self-sufficiency)을 糾明할 때 그 指針으로 利用하고자 意圖하였다. 本 基準은 한 大學校圖書館의 基本的인 義務란 그 大學校의 學生들과 教授陣의 講義 및 研究要求를 充足시키는데 있다는 事實에 一般的인 假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떠한 大學校圖書館도 그 圖書館 利用者들이 有用하리라고 생각하는 記錄情報를 全部 獲得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本 基準은 學術情報에의 協同接近을 振作하기 위한, 相互依存의 現在 限界를 糾明하기 위한, 講義와 研究를 活潑히 履行할 수 있는 環境을 維持하는데 必須的인 要因을 列擧하기 위한 諸般裝置(mechanisms)가 開發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認知하고자 試圖하였다.

本 基準이 大學校圖書館의 適切性을 決定하는데 가장 重要하리라 判斷되는 諸要素에 焦點을 맞춘 簡潔한 文書가 되도록 細心한 注意를 傾注하였다. 基準 本文에서 究명한 諸原則에 대한 敷衍은 註釋 形式으로 提示하였다.

A: 奉 仕

基準 A. 1

大學校의 講義 研究 및 公共奉仕, 計劃을 支援하기 위하여 大學校圖書館이 提供하는 奉仕는 그 圖書館의 모든 利用者가 各種 形態의 媒體에 收錄된 記錄情報를 圓滑히 活用하게 하는 그러한 奉仕가 되어야 한다.

基準 A. 1에 대한 註釋

大學校圖書館은 그 奉仕計劃을 開發하고 實施할 경우 大學校圖書館의 “단골손님”을 이룬다고 일컬어지는 學生 教授陣 其他 學事職員의⁴⁾ 要求에 優先을 두어야 한다. 다른 利用者나 機關에 대해서도 奉仕를 해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大學校圖書館은 이를 더

더까지가 副次的인 것으로 認知하여야 한다.

大學校圖書館은 다음과 같은 奉仕를 提供하여야 한다. 定해 놓은 奉仕時間 동안 充分히 識別되는 그리고 指定된 地點에서 利用할 수 있는 參考 및 情報奉仕; 個個 利用者의 圖書館資源 利用에 따른 專門的인 그리고 深層的인 支援; 別度로 作成한 書誌案內書와 主題 혹은 論題 研究案內書; 書誌探索을 主題로 한 講演과 教科課程; 非印刷媒體와 機械可讀 데이터베이스에의 接近을 용이롭게 하는 奉仕; 他 圖書館藏書에 있는 記錄情報에의 接近을 용이롭게 하는 奉仕.

이러한 奉仕는 大學校의 여러 學問領域과 다른 모든 部署에서 일어나는 廣範圍한 各種 情報上 및 書誌上 要求를 效果的으로 充足시키도록 計劃되어야 한다.

大學校는 大學院生과 教授陣의 集中的인 圖書館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置重하여야 하지만 學部學生들의 要求도 看過하지 않도록 操心하여야 한다.

끝으로, 大學校圖書館은 모든 研究圖書館과 協同勞力을 通하여 全般的으로는 高等教育을 支援하고 特殊하게는 서로서로를 支援하는 責任을 多少間 分擔하여야 한다는 事實을 認知하여야 한다.

基準 A. 2

大學校圖書館은 그 藏書의 內容物에 最大限으로 接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完全하고 一貫性이 있는 그리고 全國的인 書誌上的 標準과 條件에도 맞는 所藏 藏書에 대한 記錄을 維持하여야 한다. 基準 A. 2에 대한 註釋

한 特定 圖書館이 提供하여야 할 書誌記錄(譯註, 例컨대, 目錄)의 包括 範圍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要因에 依存한다. 그 圖書館이 開架制書架를 갖고 있느냐 혹은 閉架制 書架를 갖고 있느냐 하는 問題, 그 圖書館 特殊集書의 範圍와 性格, 그 圖書館과 大學校의 歷史와 傳統, 그 圖書館이 他圖書館 및 大規模圖書館 資源(library consortia)에 加入하게 된 特定 協助協定の 性格.

圖書館藏書에 效果的으로 接近케 하고 圖書館 運營能率을 높이기 하기 위한 圖書館의 書誌記錄은 認定된 標準 編目法과 分類法에 따라야 하고 圖書館의 書誌道具는 對內的으로 一貫性이 있어야 한다. 圖書館의 書誌記錄은 藏書의 週期的인 點檢과 聯關하여 調整되어야 한다. 산하에 圖書館單位를 많이 가지고 있는 大學校 圖書館은 산하 圖書館에서 所藏한 編目된 藏書에 대해 綜合目錄을 가져야 한다.

基準 A. 3

大學校圖書館은 그 大學校의 特殊한 責任과 優先力點의 限

4) 一般 事務職員이 아닌 教育, 研究職員.

界內에서 그 大學校의 모든 利用者들을 藏書에 最大限으로 接近시켜야 한다.

基準 A. 30에 대한 註譯

流通政策과 節次, 奉仕時間, 安全措置⁵⁾(Security arrangements) 및 實際의인 運營 能率과 같은 多樣한 要因들이 利用者를 圖書館藏書에 接近시키는 일에 介在되어 있다. 接近시키는 慣行은 圖書館마다 매우 相異하지만 몇몇 原則들은 各 圖書館이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圖書館藏書에 들어 있는 大部分의 資料는 館內 利用이건 許可받은 利用者의 館外貸出이건 간에 이를 쉽게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稀貴資料, 磨損되기 쉬운 資料, 要求가 極深한 資料에 대한 接近(access)과 流通(circulation)은 알맞게 統制되고 制限되어야 한다. 利用資格을 具備한 利用者에게 藏書를 最大限으로 利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貸出條件이 注意깊게 定해져야 하고 이는 大體로 모든 利用者群에 類似해야 한다.

圖書館藏書에 대한 損傷이나 分失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適切한 事前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貸出者에게는 流通된 모든 資料를 良好한 狀態로 迅速히 反納하도록 效果的인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大學校圖書館에서의 流通節次와 書庫管理는 效果的이어야 하고 能率의이어야 한다. 書架입기는 定規의이며 持續的인 計劃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圖書館 奉仕時間은 反應의이어야 한다. 즉, 利用이 絶頂인 時期와 閑散한 時期, 그 大學校圖書館 體系內의 分館數·分野別 圖書館數·其他 特殊圖書館數, 代用 學習空間의 求得性같은 要因에 따라 奉仕時間을 決定하여야 한다.

B: 藏 書

基準 B. 1

大學校圖書館의 藏書는 全體 大學校의 講義要求를 支援하는데 그리고 大學의 研究計劃을 圓滑히 遂行하는데 充分한 規模와 範圍를 지녀야 한다.

基準 B. 10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은 學部와 大學院을 包含한 全體 大學校의 講義計劃을 直接 支援하는데 必要한 모든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資料를 圖書館에서 손쉽게 求할수 없다면 講義計劃은 成功的으로 遂行될수 없다. 이러한 資料는 必讀 혹은 課題圖書, 參考圖書와 書誌資料, 基本的인 學術誌와 逐次刊行物을 包含하며, 아울러 學部學生과 大學院生들이 그들의 學習過程에서 쉽게 參考할 수 있게 되리라 豫期되는 如何한 圖書館資料도 包含한다.

貧弱한 藏書는 研究를 沮害할 수 있다. 充實한 藏書

를 蓄積하고 保存하는 일과 包括的인 收書計劃을 實施하는 일은 資料를 提供하는 일로 認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大學校內에서 이러한 資料의 存在는 知識을 效果的으로 增進시키고 傳播시키는 條件으로는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大學校圖書館도 教授陣이나 博士課程學生들이 그들의 研究遂行에 活用할 必要가 있으리라 여겨지는 모든 記錄情報를 그 圖書館藏書에 所藏할 수가 없다는 事實은 分明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藏書는 研究를 制限하기 보다는 振作하는 그러한 規模와 範圍와 質을 지녀야 함은 重言할 必要가 없다. 모든 大學校圖書館은 그 大學校內 學術的인 力點과 強點을 反映하고 支援하는 重點領域의 藏書를 開發하는데 注意를 傾注하여야 하지만 例外的인 研究要求를 相互 支援하기 위해 오랫동안 存續해 온 圖書館相互協定 또한 비록 가장 包括的인 研究集書라 하더라도 이를 補充하는 方便으로 持續되어야 한다.

學術文獻의 持續的인 急速한 增加와 大學社會의 構成員들을 이러한 文獻에 接近시켜 주는 데 드는 엄청난 費用은 大學校內에 이러한 文獻에 最大限으로 接近시켜 줄 公式 혹은 非公式 協定을 맺게 하였다. 資源을 分擔하는 그리고 接近을 改善하는 普遍的인 方法은 圖書館間의 貸出, 學者들의 相互訪問利用特典의 規定, 資料 共同收書를 위한 協約, 書誌情報의 分擔 같은 일이 되어왔다. 現在 實施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圖書館相互協同은 가까운 將來에 經費가 크게 節減되리라 고는 壯談하지 못하지만 自館 資源을 補充하는 두드러지게 改善된 方法들은 現在 活潑히 計劃하는 段階에 있다. 大學校圖書館은 地方的 地域的 全國的 및 國際的인 水準의 協同에 대한 觀心을 效果的으로 充足시키게끔 이러한 接近機構⁶⁾(access mechanism)의 開發에 參與하여야 한다.

한 大學校圖書館을 위해 알맞는 藏書의 規模와 그 增加率을 正確한 計量 測定法(quantitative measures)으로 糾明해 보려는 試圖는 現在까지 繼續되어 왔다. 그러나 普遍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그러한 公式은 아직 開發된 바 없다. 現在로서는 지금 나돌고 있는 그러한 公式이 必要한 規模의 一般的인 水準을 나타내는 近值似 만을 算出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그러한 公式이 任意로 그리고 機械的으로 適用된다면 그 公式은 어떤 주어진 狀況의 現實을 歪曲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計量 測定法은 窮極的으로 大學校圖書館과 大學校圖書館藏書에 適用되지 않으면 아니될 質的 評價를 誘導해내는 데 점점 더 重要해져 가고 있다. 한가지 期待되는 技術은 類似한 圖書館끼리 서로 서로를 比較하기 쉽게 하

5) 各種 藏書 分失 防止 對策 및 裝置.

6) 例컨대, consortia, OCLC, UNIMARC 등.

는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을 利用하는 일이다.³ 다소 普遍的으로 適用해 볼 수 있는 다른 技法으로는 美國教育協會가 圖書館藏書의 規模를 大學院課程의 質에 聯關시켜 보기 위해 開發한 “質指數”(index of quality)가 있다.⁴

基準 B.2

大學校圖書館의 藏書는 各種 形態의 媒體에 收錄된 記錄情報을 全部 包含하여야 한다.

基準 B.2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은 傳統的으로 大學校의 講義 및 研究計劃을 支援하는데 必要한 印刷情報의 學內 保存所로서 認識되어 왔다. 記錄情報은 필름 녹음물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各種 非印刷 媒體로도 점점 利用이 可能해짐에 따라 이러한 資料 역시 全的으로 教室에서 利用하는데 必要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大學校圖書館에서 獲得 組織 利用되어야 한다.⁵

基準 B.3

大學校圖書館의 藏書는 明白한 그리고 具體的인 藏書開發政策 範圍內에서 體系的으로 그리고 一貫性있게 開發되어야 한다.

基準 B.3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 藏書에 넓은 幅을 지니게 하고 所藏 主題間 集書의 深度에 廣範한 變化를 가지게 하려면 圖書館資料의 選擇과 收書를 左右할 藏書開發政策이 必須的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한 政策을 樹立함으로써 司書는 圖書館의 藏書가 大學校의 學事 研究 奉仕 目標과 優先(力點)事業에 聯關하여 그리고 利用可能한 資源의 限界內에서 構成 되도록 計劃을 하고 開發을 하려고 勞力한다.

教授陣 및 行政家와의 緊密한 協助아래, 司書 特別主題專門家は 이러한 政策을 成案하고 實施하는 責任을 맡아야 한다.

藏書開發이 原來 어렵다는 事實을 認識하면서, 圖書館이 圖書館에 影響을 미치는 大學校와 大學校內 各構成單位의 實際의이거나 計劃된 學事 研究 奉仕 프로그램들의 進展狀況에 關한 情報에 充分히 그리고 持續的으로 接해야 한다는 事實은 必須的인 일이다.

圖書館의 藏書開發政策은 이를 一旦 成文化한 다음 教授陣과 行政陣에 알려 그들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藏書開發政策은 學內 變化를 反映하도록 하기 위하여 定期的으로 그리고 注意깊게 檢討되어 져야 한다.

C: 職員

基準 C.1

大學校圖書館은 大學校의 要求를 充足시킬 藏書를 開發組織 維持하기에 그리고 參考 및 情報奉仕를 提供 하기에 充分한 數와 種類의 職員을 가져야 한다.

基準 C.1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 職員의 規模는 여러가지 要因에 따라 決定된다. 그러한 要因은 例컨대 外形的으로 獨立된 圖書館單位의 數, 職員을 必要로 하는 奉仕據點(service point)의 數, 圖書館이 提供하는 奉仕時間의 數, 年間 整理하는 資料의 數와 特性, 維持해야 할 整理業務의 質, 藏書의 規模, 藏書의 流通率 等이다. 그러한 要因들은 圖書館마다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最適 職員規模 設定에 결코 어떠한 單一 模型이나 公式를 마련할 수는 없다.

大學校圖書館은 多樣한 人員을 그 職員으로 가져야 한다. 즉 專門職 書記職 學生補助員 職員을 가져야 한다. 司書는 圖書館業務의 核心的인 學事 및 專門職의 機能을 遂行하여야 한다. 즉 藏書開發, 參考 및 情報業務, 圖書館資料의 書誌統整에 聯關된 本質的業務 等을 遂行하여야 한다. 各 範疇의 모든 職員은 適切한 教育和 經驗을 가져야 하며, 必要한 경우는 各其 特殊 專門分野의 碩士 혹은 專門職 學位를 지녀야 한다. 司書를 위해 認定된 最終 學位는 美國圖書館協會에서 認可한 圖書館學大學院課程으로 부터의 碩士學位이다. 그러나 때로는 追加 碩士學位가 必要한 경우도 있다.

한 特定 大學校圖書館內에서의 人事展開는 그 圖書館이 實施하는 運營과 奉仕의 範圍에 그리고 그 圖書館의 全體業務量에 聯關한다.

基準 C.2

大學校圖書館 人事業務는 健實한 그리고 現代的인 人事管理 慣行에 基礎하여야 하고, 圖書館의 目的 및 目標에 一致해야 함은 物論 大學校內 人事業務와도 一致해야 한다.

基準 C.2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內 各 範疇에 屬한 職員의 雇傭條件은 大學校內 他 聯關範疇에 屬한 職員의 雇傭條件과 一致하여야 한다. 例컨대 司書의 雇傭條件은 大學校의 餘他 學事職員의 雇傭條件과 對等하여야 하며, 아울러 圖書館의 書記職職員과 學生補助員의 雇傭條件은 全體大學校內 이와 類似한 職員의 雇傭條件과 對等하여야 한다. 이 問題에 關해 보다 具體的인 指針은 “大學 및 大學校司書의 教授身分에 關한 闡明書”(Statement on Faculty Status of Collge and University Libraries)⁶와 圖

書館職教育和 그 人的資源⁷⁾(Library Education and Personnel Utilization)⁷⁾이란 文書에 提示되어 있다.

包括的인 大學校圖書館 人事管理 프로그램은 選拔, 任用, 昇進, 終身在職權(tenure), 解雇, 訴請, 職務의 定義, 職位分類 및 給與計劃, 新入訓練과 在職中 訓練計劃, 人事考果, 職務補導(counseling)를 文書化하여야 한다.

D: 施設

基準 D. 1

大學校圖書館은 大學校와 그 프로그램의 現在 및 豫想되는 將來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施設을 가져야 한다.

基準 D.1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의 建物은 藏書를 所藏하기에 그리고 學生 教授陣 其他 利用者의 藏書利用에 넉넉한 空間을 提供하기에 充分한 規模와 質을 가져야 한다. 또한 圖書館奉仕를 準備하는데 必要한 圖書館運營을 위해서도 適切한 空間이 있어야 한다. 施設의 適切性은 單純히 現在의 要求만을 根據로 하여 決定지을 수는 없다. 大學校 在籍生의 規模와 構成, 大學校의 講義 및 研究計劃의 性格, 圖書館資料의 形態와 出版率은 圖書館이 갖추어야 할 條件에 強力한 影響을 미치므로 當然히 이러한 條件은 繼續 評價를 받아야 하고 計劃에 依存하여야 한다.

大學校圖書館은 運營上의 能率과 利用上의 效率을 높이기도 美麗해야 하고 魅惑의이어야 하며 그리고 細心하게 設計되어야 한다. 여기에 該當하는 具體的인 要素들은 다음과 같다. 즉 利用者와 職員과 藏書에 影響을 미치는 一般的인 環境的인 特色(照明, 換氣, 溫度 및 濕度 調節, 上下 및 水平 輸送, 安全施設等), 書架의 配置, 閱覽席의 數와 多樣性, 書架와 奉仕據點間의 相關關係, 資料의 效率的인 흐름(流動), 職員을 위한 空間과 運營을 위한 空間의 適切性 等이다.

圖書館建物を 設計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으로 考慮할 일은 '圖書館의 機能'이어야 한다. 圖書館의 藏書 奉仕運營의 性格과 利用者의 要求는 여러차례 심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現在 및 將來의 融通性은 圖書館設計에 있어서 하나의 重要한 要素가 된다. 大學校의 建築 樣式과 傳統이 圖書館建物の 어떤 設計上 特色을 支配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要素는 基本的으로 考慮해야 할 圖書館機能과 妥協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⁸

基準 D. 2

大學校圖書館은 大學社會가 便利하게 接近할 수 있는 곳에 位置하여야 한다.

基準 D. 2에 대한 註譯

異領域間學問研究에 갖추어야 할 條件, 學部學生의 要求에 대한 認知, 運營經費節減의 緊迫性 等等의 要因은 資料에의 接近을 改善하기 위해서 그리고 藏書의 開發과 維持에 따른 값비싼 重複을 피하기 위해서 外形的으로 分散되어 있는 圖書館 單位를 中央化하려는 觀心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學內的 地理, 利用의 密度, 藏書의 規模와 같은 事情으로 말미암아 여러개의 圖書館 單位(즉 分館)를 繼續해서 維持해야 할 경우도 있다. 외딴 保存施設은 비록 바람직 하지는 못할지라도 역시 空間 不足을 打開하기 위한 試圖로 設置해 볼 수 있다. 分散化 方式을 어떤 形式으로건 固執할 경우, 分散된 圖書館은 모든 圖書館利用者에게 미치는 不便을 되도록 적게할 수 있는 곳에 位置하여야 한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⁹

E: 管理와 統轄

基準 E. 1

大學校의 管理上 및 統轄上 構造內에서 大學校圖書館의 位置는 分明히 識別되어야 하고, 圖書館管理當局 및 그 最高管理者의 責任과 權限은 明白히 明示되어야 한다.

基準 E.1에 대한 註譯

大學校의 管理上 및 統轄上 構造內에서 圖書館이 차지하는 特殊한 位置에 대해 大學社會內에서 意見이 紛紛하다면, 그리고 圖書館 最高管理者의 權限과 責任이 明白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은 誤解와 葛藤과 混亂이 때로는 大學校와 圖書館에 다같이 損失을 招來할 수 있다. 大學校圖書館은 講義와 研究에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기 때문에 圖書館은 大學校內 主要한 學事 單位의 하나로 公式認定되어야 하고, 그 最高管理者는 凡大學的인 學事計劃과 意思決定에 正規的으로 그리고 直接的으로 參與하여야 한다. 이와 類似한 理由에서 그는 大學校의 最高學事責任者에게 直接 報告하여야 한다.

高等教育機關에서 圖書館問題에 教授陣을 參與시켜야 할 必要性은 오래전부터 認知되어 왔고 이러한 必要性은 圖書館諮問委員會를 制度化하게 하였다. 講義와 研究에 대한 圖書館의 基本的인 重要性때문에 그리고 그 結果로서 생긴 教授陣과 圖書館의 緊密하고도 持續的인 相互作用(interaction)의 必要性때문에 圖書館委員會의 存在는 이만저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7) 李炳穆 譯, "圖書館職教育和 그 人的資源", 도서관, 제 26권 제1호(1971. 1) pp.9-14 參照.

基準 E. 2

大學校圖書館 自體의 管理上 및 統轄上 構造는 明白히 具體化되어야 하고 圖書館의 特殊한 要求와 必要는 勿論 大學校의 統轄上 構造에도 一致되어야 한다.

基準 E. 2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이 組織上 活動과 意思決定을 效果의 으로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는 圖書館 自體의 管理上 및 統轄上 構造가 明白히 具體化되어야 한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이는 圖書館 統轄에 있어서 各 範圍에 屬한 모든 圖書館職員의 役割과 責任 究明을 包含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 統轄은 大學校內 他 部署에서 適用되는 原則과 實際를 反映하여야 하지만 그 大學校圖書館이 지닌 特殊한 條件과 問題를 具現하도록 必要에 따라서는 이를 修正하여야 한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基準 E. 3

大學校圖書館 利用者가 圖書館의 資源과 奉仕를 充分히 그리고 效果의 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學校內 모든 圖書館間에는 緊密한 管理上 紐帶關係가 이루어져야 한다.

基準 E. 3에 대한 註譯

결코 어떠한 單一 圖書館管理方式도 모든 大學校에 똑같이 훌륭하게 適用될 수는 없다. 그러나 大學校가 어떠한 管理方式를 採擇하든 그 方式은 圖書館資源과 奉仕를 公平하게 配布하는 일을 主要 目的의 으로 삼아야 한다. 學者들의 要求는 學問마다 相異하며 때로는 學生들의 要求도 教授들의 要求와는 相異하다. 이들 競爭的인 觀心을 항상 融和시킬 수는 없지만 圖書館管理의 重要한 任務 가운데 하나는 各 利用集團에 奉仕를 提供할 때 可能한 限 보다 많은 均衡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大學校內 圖書館 單位間의 管理上 關係를 어떻게 定하건 奉仕政策을 알맞게 調和시키고, 重複에 聯關된 經費를 抑制하고 모든 圖書館藏書에 대한 接近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適切한 調整機構(coordinating mechanisms)가 設置 運營되어야 한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圖書館業務는 勿論 다른 情報業務를 例컨대 視聽覺센터 컴퓨터센터 온라인 探索業務 등이 아직 中央集中式으로 管理되고 있지 않다면, 調整機構는 또한 이들 各組織體의 活動을 서로서로 連結시켜 주는 作業을 하여야 한다.

基準 E. 4

大學校圖書館의 主要 政策과 節次는 分明히 明示되어야 하고 定期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

基準 E. 4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은 그 主要 政策과 節次를 對內的으로 是 實效를 거둘 수 있게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納得을 시킬 수 있게 明白히 밝혀야 하고, 이를 文書로 作成 하여야 한다. 成文化한 政策은 모든 圖書館職員이 손쉽게 利用할 수 있어야 하며, 外部와 關聯된 政策 例컨대 圖書館의 藏書開發政策이나 流通政策은 圖書館 利用者와 其他 이를 必要로 하거나 이를 參考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政策은 政策을 履行하는 手段인 實務와 함께 계속 끊임새가 있도록 定期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

F: 財 政

基準 F. 1

大學校圖書館은 前記한 諸 基準에서 究明한 그 義務와 責任을 完遂할 수 있도록 充分한 資金을 配定 받아야 한다.

基準 F. 1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이 必要로 하는 全體 豫算은 오직 圖書館의 責務와 關聯해서만 決定되어 질 수 있다. 大學校 圖書館의 豫算上 要求를 決定하기 위한 公式이나 其他 “客觀的”인 測定法을 開發하려는 試圖는 많이 行해져 왔다. 이러한 測定法은 資金配定을 在籍學生數와 一致시켜 보려는 方法으로 부터 大學校全體 運營費에서 圖書館에 割當하여야 할 最低比率를 定해보려는 方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豫算決定에 대한 그와같은 이론과 “客觀的인” 接近方法은 어떠한 大學校圖書館이건 반드시 充足시켜야 할 諸般要求의 範圍와 複雜性을 항상 認定하지는 아니며, 아울러 相異한 大學校의 심히 相異한 要求를 認定하지도 아니 한다.

이러한 事情은 또 모든 大學校圖書館이 主要 部門別(俸給과 賃金, 收書, 製本, 用品, 其他 費用)로 그 豫算을 配定하는데 適用해 볼 수 있는 完熟한 模型을 究明해 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豫算配定은 窮極的으로 自館의 要求條件과 優先順位에 依存한다. 例를 들면, 단일 한 大學校圖書館이 相當數의 獨立된 圖書館 單位를 業務가 平行線을 긋고 重複을 이루게 運營하기로 作定한다면, 그 圖書館의 俸給과 賃金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보다 더 높을 것이다.

어떠한 形便아래서도 大學校圖書館으로 하여금 適切한 藏書를 開發하게 하고, 適切한 奉仕를 提供하게 하고, 必要한 運營을 實施하게 하고, 表明된 期待와 要求를 充足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大學校圖書館에 充分한 資金이 配定되어야 한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만일 資金配定이 이러한 義務를 完遂하기에 必要한 만큼 보다 적을 경우, 大學校圖書館은 大學校의 要求를 充足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大學校圖書館은 健全한 財政的인 基盤위에 運營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圖書館과 圖書館管理는 圖書館의 財政上要求를 效果의으로 究明하고 支援할 수 있어야 하며 經費支出을 올바르게 報告할 수 있어야 한다.

基準 F. 2

大學校圖書館 豫算은 大學校 豫算 가운데 뚜렷한 一部이어야 하고, 이는 大學校 全體豫算編成에도 參與하는 大學校圖書館의 最高管理者가 展開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基準 F. 2에 대한 註譯

大學校圖書館 豫算을 作成, 提出, 擁護, 管理하는 權限은 大學校圖書館의 最高管理者에게 明白히 그리고 明文으로 委讓되어야 한다. 그는 圖書館의 總體的 資源活用을 極大化 하는데 必要한 責任을 充分히 가져야 한다. 圖書館은 年中 經費支出에 關한 報告書를 올바르게 그리고 定期的으로 作成하는 責任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報告書는 大學校의 要求條件에 그리고 必要한 경우에는 大學校의 標準化한 節次와 慣例에 따라야 한다.

大學校內에서 大學校圖書館이 차지하는 重要性和 利用者와 大學校의 要求, 優先(力點)順位, 學事計劃 等の 變化에 大學校圖書館이 效果의으로 對處해야 할 必要性 때문에 大學校圖書館 豫算은 반드시 大學校 全體 豫算 編成節次와 聯關하여 그리고 이 節次를 充分히 認知하여 展開되어야 하고, 大學校圖書館의 最高管理者는 이러한 過程에 直接的으로 그리고 깊숙히 關與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A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rkeley, Calif: The Commission, 1973), p.1-2, 9-22. 이 책에는 173個 “博士學位授與機關”이 밝혀져 있다.
2. Allan M. Cartter, *An Assement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73).
3. William J. Baumol and Matityahu Marcus, *Economics of Academic Librarie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73).
4. Cartter, *An Assement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 p.114.
5. 高等教育을 위한 非印刷 媒體의 重要성을 다룬 가장 훌륭한 資料는 다음과 같다.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The Fourth Revolu-*

tion: Instructional Technolgy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1972).

6.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A History and Policy Statement*(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5), p.35-38에 言及되어 있다.
7. “Library Education and Personnel Utiliza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6).
8. 相當量의 有益한 情報를 여러 出版物에서 求得할 수 있으며, 그 中 가장 훌륭한 것은 여전히 다음 著書이다. Keys D. Metcalf,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 (New York, McGraw-Hill, 1965).
9. 이 問題는 相當히 分析을 해은 主題이다. 特히 Ralph E. Ellsworth氏의 *The Economics of Book Storage in Academic Libraries* (Metuchen, N.J.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nd the Scarecrow Press, 1969)를 參照할 것. Jeffery A. Raffel and Robert Shishko *Systematic Analysis of University Librarie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9)도 有用하다.

附 錄

大學校圖書館을 위한 計量 分析 技法

計量 測定法을 適用해 볼 수 있는 大學校圖書館은 大學校圖書館이 支援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複雜하고 多樣할 뿐만 아니라 大學校圖書館끼리도 너무나 相異하기 때문에, 모든 圖書館에 適用해 볼 수 있는 普遍的인 統計的 測定法을 立案하기가 비록 不可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심히 어려운게 事實이다. 이 問題는 現在로 利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닌 特性으로 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不完全함으로 해서 더욱 더 複雜하게 되었다. Herman Fussler氏는, 예컨대, 이 問題에 關해 다음과 같이 그의 所見을 밝히고 있다. “圖書館은 大學校와 마찬가지로 自體의 運營과 成果에 關해 매우 不完全한 分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傾向이 있다. 그러한 데이터는 利用者の 要求에 대한 시스템(譯註, 圖書館)의 反應과 利用者の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드는 費用에 特히 關聯되기 때문에, 圖書館의 反應度와 効率성을 어떻게라도 改善하고자 勞力할 경우는 그러한 데이터가 決定的으로 重要하다.”² Fritz Machlup氏는 最近, 圖書館의 藏書와 收書의 相關關係를 廣範한 規模로 測定하고자 研究하는 中에 適切한 데이터가 不足했던 事實을 不平한바 있다.³ 그 밖의 研究者들도 現在 나와 있는 各種 圖書館 데이터의 有用성에 疑心을 表明하고 있다.⁴ 그들은 이러한 不實한 데이터로는 成

果나 效率性의 測定이 틀림없이 失敗하리라는 事實에 論調의 焦點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大學校들은 훌륭한 教授陣과 學生들을 誘致하려고 熾烈한 競爭을 하고 있고 이러한 誘致競爭의 諸 要素 가운데 하나로는 圖書館奉仕와 藏書의 適切性이 들어 있다. 大學校圖書館에 대해서는 比較에 依한 評價가 내려지게 되고 그러한 比較에는 計量測定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不幸히도 大學校間의 比較를 實際로 實施하는데 必要한 데이터는, 비록 약간의 데이터는 美國圖書館協會 研究圖書館部會(ARL) 統計로 부터 얻을 수 있기는 하나, 大部分 쉽게 求할 수가 없다. LIBGIS 實態調査와 HEGIS 實態調査도 데이터를 역시 提供하기는 하나 現在 이를 利用하기에는 너무 낡았거나 혹은 利用하기 어려운 形式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分析家들은 利用可能한 데이터에만 依存할 수 밖에 없는 形便이다. 즉 ARL 統計, 本 主題에 관한 著述이 있는 權威者 혹은 分析家가 直接 實施할 수 있는 制限된 實態調査에 依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方案은 모두 多樣한 活用度를 갖고 있기는 하나, ARL 데이터만은 例外일 可能性을 除外하고는, 결코 어떠한 方法도 經驗的 事實에 根據를 두고 測定할 수 있는 原資料(raw data)를 提供하지는 아니 한다. 어떤 “普遍的인” 慣行은 認定받을 수가 있고 權威者의 勸告는 信賴받을 수 있으나 이들 慣行과 勸告는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經驗的 事實에 根據를 두는 計量 測定을 構成하지는 아니한다. 計量 測定을 하기 위해서는 測定해야 할 範疇가 밝혀져야 하고 必要한 데이터를 蒐集하기 위한 裝置(mechanism)가 開發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必要條件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缺如될 경우 ARL 데이터로 分析할 때 보다는 分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條件은 세가지 範疇로 나뉘어진다. (a) 觀察(insights)—데이터를 간단히 檢討해서 얻는 識見; (b) 比의 構成(const- ruction of ratio)—理解하여야 할 데이터의 量을 縮小하고 比較를 容易하게 하는 比의 構成; (c)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分析家 觀點에서 볼 때 比를 構成하는 機能과 대충 同一한 機能을 遂行하는, 그러나 分析家에게 圖書館과 같은 分析對象을 함께 묶는 努力을 要求하는 그리고 이 作業이 얼마나 훌륭히 成就되었는가 그 몇몇 徵兆(決定係數;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보여주는 回歸分析.

ARL 데이터를 順位 分析幅 平均值 中央値로 간단히 살펴보면, 이는 大學校間의 두드러진 相違와 差異를 머리속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同質의 集團으로 比較를 限定할 수 있는 經驗 많은 圖書館經營者에게 有用한 觀察力을 提供한다. ARL 統計를 檢討해 보면

例컨대, ARL 會員圖書館의 1976—77年度 藏書數는 하버드(Harvard)의 9,457,576卷으로 부터 맥메스터(Mc-Master)의 906,741卷에 이르기까지 分布되어 있고 藏書의 平均值는 2,127,047卷이며, 中央値는 1,653,000卷이라는 事實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讀者에게 어떤 期望感(a sense of perspective)을 提供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期望感은 값어치가 있기는 하나 多少 相異한 圖書館間의 比較에는 制限된 利用밖에 할 수 가 없다.

데이터의 縮小는 下記의 比 分析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比나 百分率을 利用하여 이룩할 수 있다. 既存 데이터로부터 誘導해 낼 수 있는 데이터 가운데 몇가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專門職對 非專門職의 比
2. 全體 圖書館運營費 對 圖書館資料費의 百分率
3. 圖書館資料費 對 人件費의 比

이러한 種類의 데이터 縮小는 데이터를 보다 理解하기 쉽게 만들어 줌으로서 分析을 돕는다. 例컨대, 1976—77年度 ARL 會員圖書館間의 專門職 對 非專門職의 比는 1.08에서 0.24까지 分布되어 있고 平均值는 0.51, 中央値는 0.49였다. 歴史的 多數의 圖書館은 6名의 非專門職에 대해 1名의 專門職을 갖는 樣相을 보였다. 全體 圖書館費 對 圖書館資料費의 百分率은 터론토(Toronto)의 19.14%로 부터 휴스턴(Houston)의 50.61%에 이르기까지 分布되어 있다. 平均值는 31.46%였으며 中央値는 30.09%였다. 大部分의 ARL 會員 圖書館은 收書豫算으로 30%를 쓰는 傾向을 보였다. 圖書館資料費의 相對費用은 人件費이다. 資料費에 對해 人件費로 밝혀진 比는 터론토의 3.6으로 부터 휴스턴의 0.8에 이르기까지 分布되어 있으며, 平均值는 1.93, 中央値는 1.9였다.

이와같은 比로부터 圖書館運營에 대해 보다 폭넓은 觀察力을 얻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圖書館이 全體豫算의 30%를 圖書購入費로 그리고 60%를 人件費로 使用해야 하고, 專門職과 非專門職의 比는 항상 1:2를 維持해야 한다고 結論을 내리기는 性急한 듯 하다. 個個 圖書館事情은 各其 政策을 달리하게 한다. 分館을 많이 가지고 있는 圖書館은 非專門職에 비해 보다 높은 比의 專門職을 必要로 할 것이다. 反對로 相異한 運營條件과 相異한 形態의 職員配置는 相異한 比를 갖게 할 것이다. 보다 廣範圍하게 展開한 比 分析의 한 例로는 다음에 나오는 項目의 하나로 敘述한 Allan Cartter氏의 圖書館資料指數(Library Resources Index)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種類의 比조차도 조심스럽게 살펴 보아야 한다. 기껏해야 比 分析은 自館 事情을 評價해 볼 수 있는 하나의 背景으로서만 寄與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回歸分析은 역시 데이터 縮小의 한 形態를 提供하지 만 이는 分析家로 하여금 圖書館과 같은 分析對象을 함께 묶어 보도록 要求한다. Baumol氏와 Marcus氏는 함께 圖書館 데이터 分析에 이를 利用하는 方法을 紹介하고 있다.⁵ 本 附錄의 마지막 部分은 이 方法을 適用한 한 例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比 分析에 適用되는 推定을 내릴때 警告한 바와 같은 警告가 回歸分析에도 適用된다.

이러한 分析에 追加해서, 여러가지 方式으로 表現된 圖書館의 成果 評價에 關한 文獻은 漸增加하고 있다. F. W. Lancaster氏는 可能한 몇가지 方式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1. 特定한 資料를 이를 必要로 할 때 提供하는 圖書館의 能力.

“2. 特定한 資料 혹은 特定한 主題에 關한 資料의 所藏을 나타내는 目錄의 能力 및 書架排列의 能力.

“3. 參考質問에 完全하게 그리고 正確하게 答辯하는 參考司書의 能力.

“4. 特定한 資料를 이를 必要로 할 때 찾을 수 있는 速度.

“5. 圖書館利用者에게 參考質問에 答辯해 주거나 文獻을 探索하고 그 結果를 提供해 주는 速度.

“6. 利用者가 스스로 圖書館奉仕를 利用하는데 들어야 하는 勞力의 量(圖書館과 圖書館藏書에 대한 外形的인 接近性, 圖書館職員의 規模와 質, 圖書館藏書를 編目 索引 書架排列 案内標示하는 方法 等等의 要因을 包含한다.)”⁶

成果 測定은 그러나 아직도 開發 初期 段階에 있다. 成果 測定은 終局에 가서는 圖書館에 매우 重要하리라 證明되겠지만 圖書館相互間에 決定을 내리기 보다는 오히려 圖書館內部間에 決定을 내리는데 가장 有用할 것 같다. 요컨대, 利用可能한 데이터를 智慧롭게 分析하는 데는 결코 간단한 解決策도, 即効의 萬病通治藥도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代用品도 없는 법이다.

比 分析의 例

下記 表 1은 圖書館資料費를 全體 圖書館運營費의 百分率로 比 分析을 해 본 것이다. 이 表는 가장 最近의 (1976-77) ARL 데이터를 根據로 作成하였다. 表를 簡單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表는 단지 하나의 例로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適用對象 93個 圖書館 가운데 20個 圖書館만을 다루었다.

圖書館資料指數

圖書館資料指數(Library Resources Index)는 Allan

M. Cartter氏가 構想하여 그의 著書 *An Assesment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⁷에 發表한 하나의 特殊한 指數이다. 이는 세가지 指數를 平均한 指數로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計算한다. 첫째, 比較할 圖書館 集團(pool)을 決定한다. (例를 들면, 表 2에서 보인 바 처럼 이러한 集團은 모두 ARL 會員圖書館이고 데이터는 1976-77年度 分이다.) 둘째, 세가지 變數(變因)로 分離한다; (a) 總藏書量; (b) 增加藏書量; (c) 定期刊行物 種數. 各 變數에 대한 平均値를 찾아 내고 그 平均値를 各 圖書館 값으로 (值數로) 나누면 各 變數에 대한 個個의 指數가 나온다.

例를 들어, ARL 會員圖書館이 所藏한 定期刊行物の 平均種數가 15,000種이고 세계 圖書館이 各其 60,000種, 15,000種, 7,500種씩 所藏하고 있다고 假定해 보자. 平均値 15,000種을 上記 세 數字로 나누면 指數値 4, 1, ·5를 얻는다. 같은 方法으로 나머지 두가지 變數 즉 總藏書量과 增加藏書量에 대한 各 圖書館의 指數値도 얻는다. 그런 然後에 各 圖書館에 대한 指數値를 合하여 셋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下降順位로 分類한다. 例컨대, 表 2의 圖書館番號 8을 찾아 보자. 그것은 미시건(Michigan)이다. 미시건의 指數値는 2.31 1.81 1.92이며 이의 合은 6.04이다. 이 合을 3으로 나누면 2.01을 얻는데 이 指數가 바로 綜合的인 圖書館資料指數이다.

Cartter氏 指數는 1963-64年度 데이터를 根據로 하였다. 그 當時 그의 一般的인 結論은 다음과 같았다. 指數 5以下인 圖書館은 여러 主題分野에 걸쳐 良質의 大學院 프로그램을 支援하기에는 너무 微弱하다. 단 工學分野를 專門化하거나 極히 制限된 數의 몇 領域에다 上級課程을 專門化하고 있는 大學에는 適切할런지 모른다.⁸

1975-76年度 ARL 데이터를 利用한 回歸分析表

ARL 會員圖書館의 데이터를 分析할 경우 이들 圖書館을 몇가지 方法으로 範疇化하면 가장 顯著한 統計的인 相關關係가 實在함을 發見한다. 그러므로 ARL 會員圖書館은 例를 들어 다음 네가지 各其 다른 方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1. 모든 ARL會員 大學 및 大學校圖書館.
2. 모든 ARL會員 美國 私立大學 및 大學校圖書館
3. 모든 ARL會員 美國 公立大學 및 大學校圖書館
4. 모든 ARL會員 캐나다 大學 및 大學校圖書館

거기다 또 各 集團을 위해서는 他(獨立) 變數値를 根據로 하여 어떤 相異한(從屬) 變數値를 豫測하는 表를 追加로 開發해 볼 수 있다. 例를 들면, 檢討해 볼 수 있는 여섯가지 變數는 다음과 같다.

表 1

1976—77年度 20個 大學校圖書館의 全體圖書館運營費의
百分率로 나타낸 圖書館資料費(值數)

順位番號	圖書館番號	圖 書 館 名	值 數
1	31	휴스턴(Houston)	50.61
2	3	애리조너(Arizona)	44.63
3	82	텍사스(Texas A & M)	44.05
4	87	버지니아 공대(VPI & SU)	42.84
5	81	텍사스(Texas)	42.69
6	28	조지아(Georgia)	42.21
7	35	아이오어(Iowa)	42.15
8	71	사우스 캐롤라이너(South Carolina)	42.08
9	68	라이스(Rice)	41.67
10	42	루이지애나 스테이트(Louisiana State)	40.19
11	20	커네티컷(Connecticut)	40.04
12	60	오클라호마 스테이트(Oklahoma State)	39.51
13	53	네브래스카(Nebraska)	39.30
14	80	테네시(Tennessee)	39.22
15	52	미주우리(Missouri)	38.93
16	4	애리조너 스테이트(Arizona State)	38.62
17	22	다트머스(Dartmouth)	38.30
18	24	에모리(Emory)	38.23
19	1	앨라배마(Alabama)	38.08
20	57	노틀담(Notre Dame)	37.87

表 2

1976—77年度 20個 ARL 會員圖書館에 適用한 圖書館資料指數

順位 綜合 指數	圖 書 館 名	總 藏書量 指 數	增 加 藏書量 指 數	逐次刊行物 指 數	綜 合 圖 書 館 資 料 指 數
1	하버드(Harvard)	4.49	2.25	3.89	3.54
2	일리노이(Illinois)	2.74	1.95	3.43	2.71
3	예일(Yale)	3.24	2.40	2.44	2.69
4	캘리포니아(Calif., Berkeley)	2.31	1.75	3.90	2.65
5	텍사스(Texas)	1.91	2.87	2.41	2.39
6	인디애나(Indiana)	2.07	2.39	1.71	2.05
7	컬럼비아(Columbia)	2.22	1.57	2.31	2.03
8	미시건(Michigan)	2.31	1.81	1.92	2.02
9	스탠포드(Stanford)	2.05	1.67	2.13	1.95
10	토론토(Toronto)	1.87	2.15	1.66	1.90
11	캘리포니아(Calif., Los Angeles)	1.84	1.44	2.26	1.84
12	워싱턴(Washington)	1.52	2.16	1.64	1.77
13	코오넬(Cornell)	1.87	1.33	2.08	1.76
14	시카고(Chicago)	1.83	1.60	1.76	1.73
15	위스콘신(Wisconsin)	1.52	1.30	1.92	1.58
16	오하이오 스테이트(Ohio State)	1.53	1.50	1.15	1.39
17	미네소타(Minnesota)	1.58	0.93	1.48	1.33
18	듀크(Duke)	1.35	1.28	1.33	1.32
19	프린스턴(Princeton)	1.37	1.18	1.25	1.27
20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1.31	1.08	1.10	1.16

1. 專門職 職員數
2. 全體 職員數
3. 總 增加藏書量
4. 圖書館資料費
5. 全體 圖書館費

6. 所藏하고 있는 現刊 定期刊行物 種數

이에 따라 前記한 네개 集團 가운데 하나에 屬해 있는 各 圖書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豫測을 내려 볼 수 있다.

1. 所藏 藏書數에 根據를 둔 專門職 職員數
2. 所藏 藏書數에 根據를 둔 全體 職員數
3. 所藏 藏書數에 根據를 둔 總 增加藏書量
4. 所藏 藏書數와 總 增加藏書量에 根據를 둔 圖書館資料費
5. 所藏 藏書數, 總 增加藏書量, 全體 職員數에 根據를 둔 全體 圖書館費
6. 所藏 藏書數에 根據를 둔 現刊 逐次刊行物種數

이런 式으로, 各 圖書館에 대한 觀察과 아울러 各豫測表에는 個個 從屬 變數에 대한 實際值 推定值 實際值와 推定值間의 差異인 誤差值를 包含한 諸 變數의 羅列(display of variables)이 圖表化 될 수 있다. 例를 들어 下記 表 3에 보인바와 같이 한 圖書館이 그 所藏藏書數에 根據를 두고 갖추어야 할 專門職職員의 數를 豫測하는 變數羅列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假定해 보자.

表 3 專門職 職員의 規模에 適用한 回歸分析의 例(Y)

圖書館	Y 實際值	Y 推定值	誤差值	座標
圖書館 A	37	39	-2	×
圖書館 B	25	48	+4	×
圖書館 C	63	55	+8	×
圖書館 D	60	72	-12	×

標準
最小子乘線

첫번째 欄은 個個 圖書館을 나타내고, 두번째 欄은 個個 變數에 대한 實際值를 보여주며, 세번째 欄은 이 미 計算해 놓은 回歸方程式計算에 根據를 둔 期待值(expected value)를 보여주고, 네번째 欄은 두번째 欄과 세번째 欄의 差異를 보여주며, 다섯번째 欄은 데이터의 座標(plot)를 나타내고 있다.

圖書館 A를 살펴보면 그 圖書館은 37名의 專門職 職員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 A와 同一한 比較集團에 들어 있는 他 圖書館을 根據로 하면 그 圖書館은 39名의 專門職 職員을 가져야 한다. 實際值는 期待值보다 2가 적으며, 그래서 座標의 位

置는 最小子乘線(the least squares line)의 왼쪽에 자리잡게 된다. (이 技法에 대한 詳細한 說明은 統計에 關한 標準教科書를 어느것이든 參照할 것.) 圖書館 B와 圖書館 C는 期待되는 數보다 더 많은 專門職 職員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는 最小子乘線의 오른쪽에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이를 檢討해 보면, 圖書館 經營者는 自己 圖書館과 他 圖書館間의 어떠한 뚜렷한 變則도 이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다.

附錄에 대한 參考文獻

1. Doctoral granting institutions in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A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rkeley, Calif.: The Commission, 1973), p.1-2, 9-22.
2. Herman H. Fussler, *Research Libraries and Technology, A Report to the Sloan Founda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3), p.61.
3. Fritz Machlup, "Our Libraries: Can We Measure Their Holdings and Acquisitions," *AAUP Bulletin* 62: 303-7 (Oct. 1976).
4. Morris Hamburg and Others, *Library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System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4).
5. William J. Baumol and Matityahu Marcus, *Economics of Academic Libraries* (Washington, D.C. America Council on Education, 1973).
6. F. W. Lancacte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C.: Infomaton Resources, 1977), p.323.
7. Allan M. Cartter, *An Assesment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66).
8. *Ibid.*, p.114.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독서하는 국민 /

발전하는 국가